



제 1173호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4- 934호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 2
비용 공고
- 공고 제2014- 939호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3
통지 공시송달
- 공고 제2014- 946호 공유일반재산(집합건물) 전세 입찰 공고 4
- 공고 제2014- 9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 10
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9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 23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9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 30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20호 남동문화예술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38
운영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 시

- 고시 제2014- 71호 도로명주소 고시 51
- 고시 제2014- 72호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53
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제2014- 73호 도로명주소 고시 55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34호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 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사본의 종 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복사본 비용	비 고
선거인 명 부	○ 일반사본(복사기이용) A4용지 1매당 : 70원 ○ 일반사본(프린터이용) A4용지 1매당 : 70원	○ CD 이용시 (500원 × CD수)+(25원×면수)	
거 소 투 표 신고인 명 부	○ 일반사본(복사기이용) A4용지 1매당 : 70원 ○ 일반사본(프린터이용) A4용지 1매당 : 70원	○ CD 이용시 (500원 × CD수)+(25원×면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4년 5월 19일 ~ 2014년 6월 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2. 당사자	성 명	임양섭	주민등록번호	610714-*****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서창남로 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부동산의 표시		인천시 남동구 서창남로 17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6. 법적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46호

공유일반재산(집합건물) 전세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 공유일반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전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일반재산(집합건물) 전세 입찰 공고

나. 전세대상 재산의 표시

구분	재산의 표시			전세 조건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목적	최저예정가격 (1년전세금)	전세기간	
집합 건물	담방서로23번길 5, 201동 903호 (만수동,이삭아파트)	대지	119.245 (43평 형)	전세	193,000,000원	계약일로부터 2년	

※ 현재 상태대로 전세하며, 입찰 참가자는 전세 재산(현장)에 대한 위치 및 이상유무 확인요망

다. 전세금 : 첫째 연도의 전세금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가로 결정하며,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전세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제3항에 의거 산출한 금액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입찰기간		개찰집행		비고
시작	마감	일시	장소	
2014.5.21(수) [10:00]	2014.5.29(목) [16:00]	2014.5.30(금) [1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실거주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며, 그 입찰참가자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고객가이드(온비드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 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환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10/100이상 금액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은행 계좌로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 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 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7. 입찰의 성립 및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 상에서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되며, 낙찰 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경우

다.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라.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의 경우

바.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 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일방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전세금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고 우리구 재무과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 잔액을 일시불 납부(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용목적에 위배된 경우는 낙찰이 무효가 되며 입찰 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다. 전세계약 체결이후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과납금 중 원상회복 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이자 가산없이 반환됩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입찰재산의 현장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공유재산 대부조건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 공유재산 대부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공유재산 전세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 등 전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 다. 전세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세받은 자가 집니다.
- 라. 전세기간 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매각 등에 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마.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전세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바.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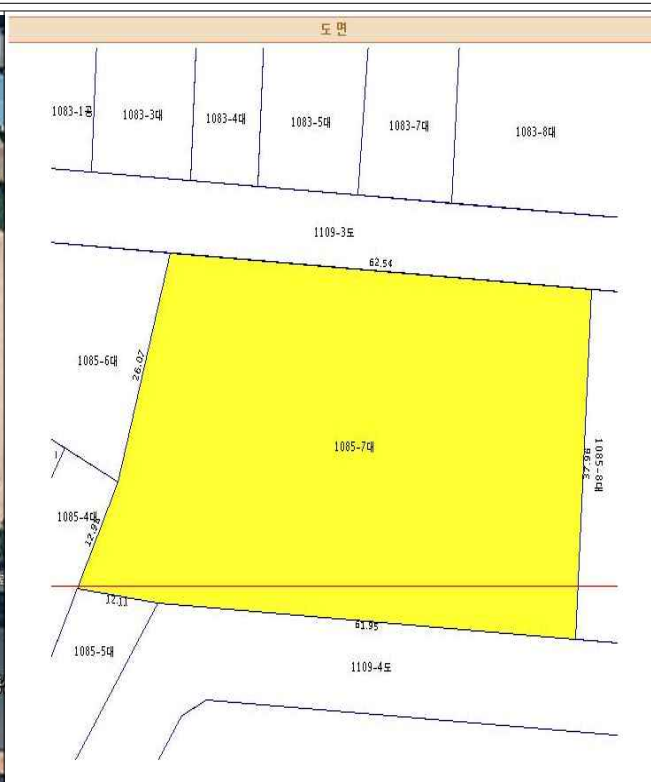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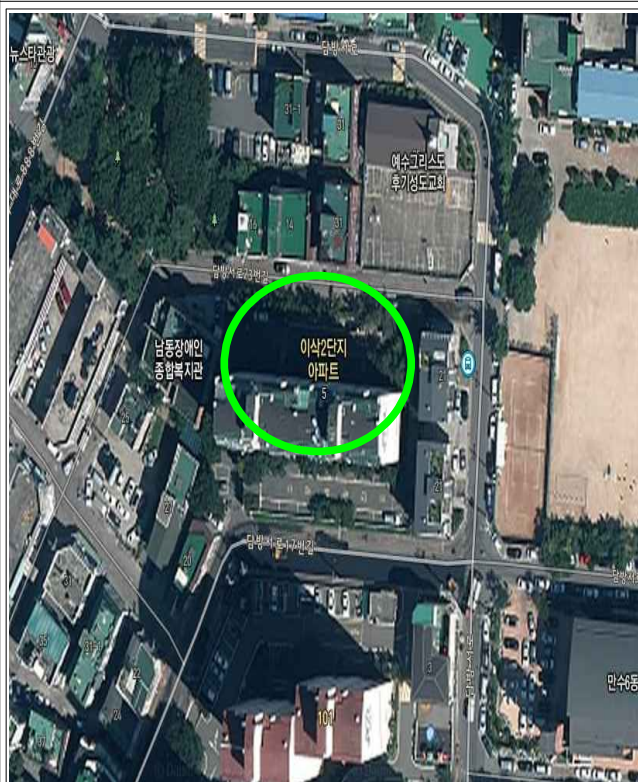
12. 기타 문의처

- 가.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 전화번호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 나. 기타 전세계약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재무과(☎ 032-453-227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 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23번길 5, 201동 903호(만수동,이삭아파트)
면 적	119.245㎡(43평형)

위 치 도



실내 사진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 3. 7)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고 지정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금고지정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금고약정 기간 등(안 제2조 ~ 제5조)
-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안 제6조 및 제7조)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 ~ 제10조)
- 금고지정 절차(안 제11조)
- 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및 해지(안 제12조 및 제13조)
- 금고운영 보고 및 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안 제14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전화 : 453-2360, FAX : 453-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의 지정과 그 금고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 및 운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약정 기간) 금고약정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만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기준) ① 제6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2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약정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그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제2항 관련)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소계	3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6점) - 국내 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8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에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소계	18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소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 제2항 관련)**1. 일반원칙**

- 가.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함
- 라.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23점)

-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4)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가능

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민 이용의 편의성 (18점)

1)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5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 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9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 각 동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이후 최장 가능 기간 4년 만료 시기 도래 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을 교체해야함에 따라 안정적·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위원 임기를 개정하고 지역회의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연임 가능, 위원장·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4항)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위원 임기는 연임 가능, 위원장·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안 제20조제4항)

- 지역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토록 함(안 제20조제7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 신설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5, FAX 453-2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의견수렴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 각 동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이후 최장 가능 기간 4년 만료 시기 도래 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을 교체해야함에 따라 안정적·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위원 임기를 개정하고 지역회의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연임 가능, 위원장·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4항)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위원 임기는 연임 가능, 위원장·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안 제20조제4항)
- 지역회의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토록 함(안 제20조제7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 신설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임기 중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하며, 위원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 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u>다만</u>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⑤ (생략)	제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하되----- ----- . <u>다만</u> <u>위원장,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u> ----- -----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 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u>다만</u> 보궐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하되----- ----- . <u>다만</u> <u>위원장,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u>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u>임기 중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u>	⑦ <u>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u>

현행	개정안
<u>수 없어</u> 해촉되었을 때는 기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위촉하고, 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⑧ (생략)	<u>조를 준용하며, 위원이</u> ----- ----- ----- ----- -----. ⑧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동(洞)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2013.11) 및 남동구 동(洞)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계획에 의거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통장 복지도우미 임무 신설(안 제7조제5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3, FAX 453-2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의견수렴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5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 안 이 유

- 보건복지부 동(洞)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2013.11) 및 남동구 동(洞)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계획에 의거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통장 복지도우미 임무 신설(안 제7조제5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 고 자 료

- 보건복지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 (2013.11)
- 남동구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계획 (2013.12)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개폐하는”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거하여”를 “따라”로 하고, 중반부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항제1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6호 내지”를 “제6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통장에 대하여”를 “통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촉된 자에 대하여”를 “위촉된자에게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제5호”를 “제7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약간명”을 “몇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u>의한</u> 인천광역시남동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u>개폐하는</u>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13. 8. 8.) ② (생략)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의거하여</u> 동장이 위촉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u>의거</u>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한다. 1. 통장은 <u>당해</u>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남녀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3. 8. 8.) 2. 반장은 봉사정신이 확고한 남녀로서 <u>당해</u>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3. (생략)	제1조(목적) ----- ----- <u>따른</u> -----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 ----- ----- ----- ----- -----, ----- <u>개정 또는 폐지하는</u>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u>따라</u>-----, ----- ----- <u>따라</u> ----- -----. 1. ----- <u>해당</u> ----- ----- ----- ----- ----- -----. 2. ----- ----- <u>해당</u> ----- ----- -----. 3. (현행과 같음)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고, 3회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통·반 관할구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8. (생략)
9.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호 내지 제8호 신설 : 2005. 12. 30.)

④ (생략)

⑤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거 해촉된 통장에 대하여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주택·빌라·공장 밀집지역, 영구임대주택 등에 한하여 2회 이상 공개 모집 하였으나 추천된 사람 또는 지원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통장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 4. (생략)

<신설>

③ -----

-----.

1. 해당 -----

2. ----- 국외여행 -----

3.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
----- 제6호부터-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라 -----
통장은-----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위촉된 자에게는-----
-----.

제7조(임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

5. (생 략)

제9조(건의사항 처리) ① (생 략)

② 건의사항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상급기관,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 협의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 월 회의개최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총,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건의사항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몇 명-----.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4조(실비변상) ① -----

---- 필요한 ----

-----.

②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14 - 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관람제한 사항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호와 평등한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 수시대관 신청자의 사용료 납부기간 확대 및 사용 취소시 반환규정 완화로 사용자 부담 경감과 시설 활성화

3. 주요 개정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관람제한 중 정신이상자 삭제(안 제6조제2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수시대관일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기간 확대(안 제12조)
 - 즉시 납부에서 7일이내 납부로 기간연장
- 수시대관 및 부속시설 사용취소 경우, 반환규정 완화(안 제14조2항)
 - 수시대관 또는 부속시설 대관에 대하여 10일 이내 서면취소 신청시 시설사용료의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
- 명확한 의미를 위해 단서조항에서 별도조항으로 이동(제14조2항 단서조항 → 안 제14조3항)
 -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신청시 전액 반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남동문화예술회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문화예술회관 경영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437번길 32 남동문화예술회관 / ☎ 453-5183 FAX 453-5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5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관람제한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 주요내용

- 관람제한 중 정신이상자 삭제(안 제16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도개선 건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또는 관 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람의 제한)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정신이상자 또는</u> 전염의 우려 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2. <삭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7. (생략)	3.~7. (현행과 같음)

정신장애인의 의회 등 공공시설 출입제한 규정 개선 필요

□ 현황

○ 2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17개, 기초227개)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음

– 17개시도 및 시군구의 자치법규 9만6224건 중 장애인 차별조항 1727건인 것으로 조사됨(전국장애인조례 제·개정추진연대, 2012년)

※ 서울(156개), 부산(122개), 대구(61개), 인천(79개), 광주(57개), 대전(37개), 울산(31개), 경기(212개), 강원(163개), 충북(102개), 충남(128개), 전북(93개), 전남(152개), 경북(192개), 경남(128개), 제주(14개)

○ 차별적인 자치법규로 인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차별과 이용 제한을 겪고 있음

○ 시도의회들의 경우‘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의회방청 제한

[표 1] 의회 방청제한과 관련한 의회 회의규칙 및 홈페이지 실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규칙		○				○		○	
홈페이지	○	○	○		○	○	○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규칙				○			○	○	
홈페이지	○				○	○	○	○	

– 17개시도 중 6개 지역에서, 의회 회의규칙에 11개 지역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정신장애인의 의회 방청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물의 이용도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문제점

○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공공시설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

최근 지적장애 3급인 이 아무개(18·부산)씨는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려다 포기했다. 시의회 누리집 방청안내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이하 중략>

2013. 8.18 [한겨레 신문] ‘지자체 조례의 황포 ‘장애인’은 도서관·박물관 못가!’

○ 의회 회의규칙 및 공공이용시설 조례들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법규에 명시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 대구시·인천시·광주시·충남·북·전남도 의회 등은 회의규칙에서 관련 조항 삭제

○ 이러한 규정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화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자치법규의 조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전의 의견

○ 자치법규 및 홈페이지에 정신적 장애인의 공공시설의 출입 및 이용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정신적 장애인의 의회 회의 참관을 제한하는 시도의회 회의규칙 조항 및 홈페이지 관련 내용 삭제

–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제한 조항 삭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5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13년 남동구 종합감사시 회관의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 지적된 사항을 검토, 반영
-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료 납부규정과 사용신청 취소시의 반환규정을 완화하여 시설대관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시대관 사용료 납부기간 완화(안 제12조 1항)
 - 계약체결과 동시 전액 납부에서 체결후 7일이내로 완화
- 수시대관 및 부속시설 사용 취소시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제14조 2항)
 - 전액 미반환 이였으나, 10일이내 서면으로 취소 신청시 10%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부대설비 반환규정을 단서조항에서 별도조항으로 이동(제14조 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1.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2. 부평아트센터 대관료 환불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를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시대관 또는 부속시설 대관에 대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 명목으로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u>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u>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 ----- ----- ----- ---. ---- <u>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7일이내</u> ----- ----- ----- ----- ----- ----- ----- ----- ----- ----- ----- -----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략)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 안될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 설>

----. 다만, 수시대관 또는 부속시설 대관에 대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한다.

③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참고자료

1.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2. 부평아트센터 대관규정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연습실 및 부대설비 대관의 경우 사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 신청을 한 경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7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50번길 3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5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5.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4-6외 2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소래포구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제명	2014.05.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 64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45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7-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627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5.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815 번길 9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5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4번길	13-36	20091116	수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4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 영하여 제명	2014.05.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현로14번길 13-3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36을 건물번 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17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87번길	9-15	20091116	간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88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 하여 제명	2014.05.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간석로87번길 9-1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15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76번길	55	2009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76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 영하여 제명	2014.05.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천로176번길 5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5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50번길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4-8	2014.05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72호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
- 면 적 : 5,527m²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필요시 2년 연장)
-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기간을 단축하여 해제 가능. 다만, 국토교통부가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날에 종료

3.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

-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4.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정하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

- 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다.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라.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마.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바.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 사.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수산개발과(☎ 032-453-6093)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7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19외 6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133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6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5.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54번길	53-19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5.2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54번길 53-1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3-19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3번길	125	2009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40m지 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 하여 제명	2014.05.2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23번길 12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25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1번길	7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52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 영하여 제명	2014.05.2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주대로551번길 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68	20091116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5.2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비류대로762번길 16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8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21번길	20-46	20091116	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2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 여 제명	2014.05.2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고잔로21번길 20-4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46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131	2009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5.2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370번길 13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1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 12번길	8	20091116	만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2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 하여 제명	2014.05.2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경로12번길 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1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	2014.05.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3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00	2014.05.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 30번길	5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71-2	2014.05.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